

<p>동물보호법 시행령 [시행 2019. 3. 21] [대통령령 제29614호, 2019. 3. 12, 일부개정]</p>	<p>동물보호법 시행령 [시행 2020. 3. 21] [대통령령 제30532호, 2020. 3. 17, 일부개정]</p>
<p>제4조(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) 법 제2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</p>	<p>제4조(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17. (생략)</p>	<p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18. 「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」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</p>
<p>제12조(윤리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	<p>제12조(윤리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동물실험계획을 심의·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2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----- -----.</p>
<p>③ ~ ⑦ (생략)</p>	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권한의 위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16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12. (생략)</p>	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13.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·제3호·제8호·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p>	<p>13. ----- 제47조제1항제2호·제3호 ----- ----- 같은 조 제2항제2호·제3호·제5호의2·제8호·제10호 ----- ----- -----.</p>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(생략)	제20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<p>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·제3호·제8호·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: 농림축산식품부장관</p>	<p>1. ----- 제47조제1항제2호·제3호----- ----- 같은 조 제2항제2호·제3호·제5호의2·제8호·제10호----- ----- -----</p>
<p>2.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법 제47조제1항제1호·제2호, 제2항제2호·제3호·제5호·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: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</p>	<p>3. ----- 제47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, 같은 조 ----- ----- ----- 같은 조 제3항 ----- ----- -----</p>